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

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나,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탁을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의6)

체납자	성명 (상 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 (사업장)			
체납액의 내용 (단위: 원)				
(전자)납부번호	채권종류	체납액	최초 이행기한	비고
위탁 기간		. . . ~ . . .		
해지일자	. . .			
해지 사유	[] 국가채권이 변제된 경우			
	[] 국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			
	[] 「국가채권 관리법」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총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			
	[] 「국가채권 관리법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			
	[] 「국가채권 관리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채무가 면제된 경우			

끝.

발신명의

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 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	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서명	결재권자	직위 (직급)서명
협조자	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	접수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		
우	주소	/ 홈페이지 주소			
전화()	전송()	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			